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유의서 및 입찰공고에 정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 관련 서류"라 한다)를 열람 또는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양식) 1부.
2. 가격입찰서(본교 양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6. 위임장(대리인 참가 시) 1부.
7. 제안요청서
8. 기타 증빙 서류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본 대학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을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

권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2항4호에 정한 단체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본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입찰참가) ④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 (가격입찰서의 작성) ① 가격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가격입찰서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③ 가격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④ 가격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이여야 한다.

⑤ 가격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0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제11조 (낙찰자의 결정) 낙찰자의 결정 방법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12조 (협상 및 계약) ①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13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뉴욕주립대학교총장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 대학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타사항)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